**블랙세인트 동아리 회칙**

**제 1장 총칙**

**제 1조 [동아리 명칭]**

1. 본 동아리의 명칭은 “블랙세인트”로 한다.

**제 2조 [목적]**

1. 본 동아리는 중앙 락밴드 동아리로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팀을 만들어 공연을 하고,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3조 [동아리 소재]**

1.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,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.

**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**

**제 1조 [임원진의 임기]**

**1항** 임원진은 회장, 부회장, 인사과장 및 기타 ‘임원진’으로 통합 정의한다.

**2항** 각 임원진의 임기는 1학기로 한다.

**제 2조 [임원진의 권한]**

**1항** 모든 임원진 및 부원은 회장의 지시와 업무지침에 반대할 수 없으며, 이의가 있을 시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진과 30인 이상의 부원의 동의서를 지참하여 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.

**제 3조 [임원진의 권한 박탈 방식]**

**1항** 회장의 탄핵은 2조 1항에 해당하는 요건이 갖춰진 뒤에 부회장과 인사과장의 탄핵위원회 개최를 통해 회장을 참석 시키고 탄핵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.

**제 4조 [임원진 선출 방식]**

**1항** 임원진의 선출은, 전임 인사과장과 회장의 임의 선출로 결정하고 해당 부원에게 구두로 통보하며, 통보받은 부원은 지침에 반대할 수 없다.

**제 3조 [임원진]**

1. 회장은 동아리 내외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.

2.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조한다.

3. 기타 임원진은 회장과 부회장의 업무를 보조한다.

**제 4조 [집행부]**

1. 집행부는 임원진과 집행부원으로 구성되며, 집행부원은 임원진이 선임한다.

2. 집행부는 동아리 내부에 한하여 “컨텐츠 기획팀”으로 명명한다.

3. 집행부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.

1) 집행부는 동아리 내부의 행사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.

2) 집행부는 동아리 내부 행사에 대한 시안서를 부회장 및 인사과장에게 보고 없이 회장에게 직접 보고한다.

**제 5조 [집행부 회의]**

1. 집행부 회의는 집행부원 2명과 회장, 부회장, 인사과장과 함께 월 1회 이상 진행한다.

2. 집행부 회의는 반드시 문서로 회장이 기록한다.

**제 3장 회원**

**제 1조 [회원 자격 및 의무]**

1. 본 동아리의 회원 자격은, 회장과 인사과장이 면접 및 오디션을 통해서 부여한다.

2. 동아리방 내부의 모든 장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.

**제 2조 [회원의 가입]**

1. 본 동아리의 회원 가입은 매년 학기 초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면접 및 오디션을 통하여 선발한다.

**제 3조 [회원의 탈퇴]**

1.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직접 의사표시를 하고, 인사과장의 승인을 거쳐 탈퇴가 성립된다.

**제 4장 회의**

**제 1조 [정기 모임]**

1. 동아리의 정기 행사인 학기별 정기공연은, 팀 단위로 출전한다. 각 팀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정기공연 합주 모임을 갖는다. 신입 기수의 경우 주 2회 이상의 합주 모임을 진행한다.

2. 정기 합주 모임의 시간은, 각 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, 자율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, 회장이 임의로 조정한다.

**제 2조 [총회]**

1. 동아리원 전원이 참여하는 총회의 경우, 매 학기 정기공연이 끝난 후 진행한다. 단, 참여의사에 대한 결정권은 전부 동아리원에게 있으며, 자율적 선택이 가능하다.

**제 5장 재정**

**제 1조 [수입]**

1. 동아리의 수입은 회비 및 공연 티켓 비로 정하며, 이는 본 동아리의 활동비로 전부 사용한다.

**제 2조 [회비]**

1. 동아리의 모든 부원은 회장과 인사과장이 지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, 그 회비는 회장과 부회장, 그리고 인사과장의 회의를 통해 해당학기 시작 1달전에 필히 공지한다.

**제 3조 [결산보고]**

1. 회장은 회비 사용내역을 전부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원 전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

2. 특별한 열람 요구가 없을 경우에, 분기에 1회씩 회비 사용내역 보고를 한다.

**제 6장 동아리 등록**

**제 1조 [등록]**

1.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.

**제 7장 부칙**

**제 1조 [회칙 발효]**

1. 각 개정안의 개정회칙은 다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.

초판 [2024.03,31]

**제 2조 [회칙 개정]**

1.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에 있어 조항의 일부 수정이 있을 경우 회장이 임의로 개정하여 통보하고, 조항의 추가 혹은 삭제의 경우 동아리 회원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요구한다.